

차의과학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		2019년도 제6차 회의록	
일 시	2019. 08. 29(목) 10 : 00 ~ 11 : 00	장 소	미래관 1006호
참석의원	정광희 의원, 김진경 의원, 김재환 의원, 임지영 의원, 황태선 의원, 오일숙 의원, 최근영 의원, 박재범 의원, 최지원 의원, 배진건 의원, 장용석 의원		
불참의원			
간 사	강창호 기획실장, 경희수 기획실 주임		
I. 안 건 ○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 ○ 차의과학대학교 제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II. 회의내용 ○ 정광희 의장(이하 의장)이 의원정수 11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함 ○ 의장이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및 제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와 관련하여 강창호 기획실장(이하 기획실장)에게 설명을 요청함 ○ 기획실장이 배포된 유인물을 토대로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및 제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건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○ 우선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 건은 다음의 신·구조문과 같다			
현 행		개 정 (안)	
제1조(목적) 이 학칙은 차의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의 학사와 조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 -----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차의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의 설립정신과 교육목적·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<신설>		제1조의 2(설립정신, 교육목적, 교육목표) 대학교의 설립정신, 교육목적,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. ① 설립정신: Christianity(기독교적 이웃 사랑의 정신), Humanism(인간 존중의 정신), Academia(연구와 탐구의 정신) ② 교육목적: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참된 지성과 창의적 전문성을 갖춘 전인적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와 세계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. ③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인류사회의 평화를 위해 공헌하는 기독교적 인격 함양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진취적인 지도자를 육성한다.	

현 행	개 정 (안)
	2. 다원화된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성과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고, 올바른 인성 및 가치관을 갖춘 전인적 지도자를 육성한다. 3. 다양한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지식과 연구 역량을 함양하고, 전문지식 습득 및 연구능력 배양을 통한 창의적 전문기량을 육성한다.
<신설>	부 칙 (2019.O.O. 공포) 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부속기관에 관한 규정은 이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제3조(부속기관) ① 대학교에 부속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. 1. 부속병원 2. 행복교육원 3. 소수학생지원센터 4. 도서관 5. 생활관 6. 보건실 7. 사회봉사센터 8. 실험동물센터 9. 연구지원센터 10. 전산정보실 11. 글로벌미래교육원 12. 양성평등센터 13. 학생행복본부 (<삭제 2019.4.1.>, <u>학생 만족센터</u>, <u>취업지원센터</u>, <u>행복나눔센터</u>) 14. 글로벌교류센터 15. 직장예비군중대 16. 창업지원단 (창업보육센터, 창의인재센터, 기술지원센터) <신설 2018.4.1.> <개정 2019.4.1.> 17. 교육혁신원 (교육혁신센터, 학습지원센터) <신설 2019.4.1.> ② 부속기관에는 기관장을 두며, 그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.	제3조(부속기관) ① ----- -----, 1. ----- 2. ----- 3. ----- 4. ----- 5. ----- 6. ----- 7. ----- 8. ----- 9. ----- 10. ----- 11. ----- 12. ----- 13. -----, 학생 행복센터, -----, 사회기여센터) 14. ----- 15. ----- 16. ----- ----- 17. ----- ----- ② ----- -----,
<신설>	부 칙 (2019.O.O. 공포) 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부속기관에 관한 규정은 이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○ 임지영 의원이 학칙 개정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○ 기획실장이 학칙 제1조의 경우 우리 대학의 설립 정신, 교육목적, 교육목표를 학칙에 반영하여 대학기관인증평가에 대비하고자 함임을 설명하고 제3조의 경우 부속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을 설명함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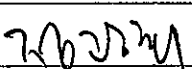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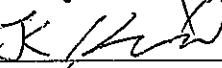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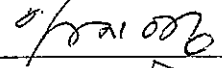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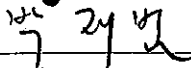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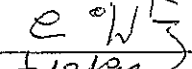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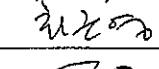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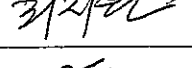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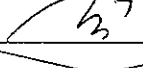
- 기획실장이 제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건은 다음과 같으며 2019학년도 제1차 대학원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임을 설명함

현행						개정(안)			
[별표1] 각 대학원 입학정원						[별표1] 각 대학원 입학정원			
분 야		2017학년도		2018학년도		분 야		석사 학위 과정	박사 학위 과정
		석사 학위 과정	박사 학위 과정	석사 학위과 정	박사 학위과 정				
일반대학원		74	79	74	79	일반대학원		74	79
특 수 대 학 원	통합의학대학원	35				특 수 대 학 원	통합의학대학원	60	
	보건산업대학원	30					보건산업대학원	30	
	미술치료대학원	60					미술치료대학원	50	
	임상약학대학원	20		280			임상약학대학원	20	
	경영대학원	30					경영대학원	25	
	스포츠의학대학원	40					스포츠의학대학원	60	
임상상담심리대학원						임상상담심리대학원	35		

- 의장이 상정된 안전에 대한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기획실장에게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0조(회의결과)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설명하다.
- 기획실장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의 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답변하다.

III. 폐회선언

○ 의장은 기타 논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

확 인	의 원	서 명	의 원	서 명
	정광희		김재환	
	김진경		황태선	
	임지영		박재범	
	오일숙		최근영	
	최지원		배진건	
	장용석	